



You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ax Law (세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조세재정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의 주요 기능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리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는 주 및 지방 조세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뉴욕주는 Tax Law(세법) 41 항에 Taxpayers' Bill of Rights(납세자 권리장전)를 수립하였습니다. 조세부(Tax Department)는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을 지원합니다.

- 납세자의 권리와 감사에 관한 조세부의 의무를 설명하는 비전문적 서술
- 납세자들이 조세부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 환급을 청구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결정
- 조세부가 세금 책무를 집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절차(소위 징수 과정)

당국의 웹사이트에서 아래 참조된 모든 간행물을 포함해 납세자로서 본인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또는 당국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본 간행물 마지막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본 간행물은 세금 행정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납세자들의 권리에 대한 요약を提供합니다.

뉴욕주 세금 감사

당국은 납세자들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뉴욕주 Tax Law(세법)에 의하면, 감사 기간 동안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에 신고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록은 무엇이든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 대상인 신고서 유형에 따라, 여기에는 납세자의 소득, 영수증, 비용, 신용 및 기타 사업 기록에 대한 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문 감사 기준

감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 원칙 및 감사 기법에 정통한 조세부 감사관이 전문 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관은 해당 납세자, 납세자의 가족 또는 납세자의 종업원(사업체 감사의 경우)과 어떠한 개인적 관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사관은 감사 대상인 사업체에 어떠한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는 공정하고 정중하며 전문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 과정 동안 언제든지 이 기준이나 납세자의 권리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감사관의 감독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비위 혐의를 신고하시려면, 당국의 내무 사무실(Office of Internal Affairs)에 518-451-1566 번으로 전화하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을 보내주세요.

**NYS TAX DEPARTMENT
OFFICE OF INTERNAL AFFAIRS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0811**

우편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간행물 55, *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감사 기간 동안 납세자의 권리

반드시 감사관과 협력하되, 본인의 권리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합리한 요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

- 감사 기간 동안 사업이나 납세자의 개인 생활의 차질을 최소화, 및
- 자의적 조치로부터 납세자 보호.

법적 시효

뉴욕주 Tax Law(세법)는 일반적으로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당국의 권리에 3 년의 시효를 설정합니다(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세금 신고 후 3 년). 그러나 남용의 조세 회피 거래가 있을 경우, 또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에서 소득의 25% 이상을 누락한 경우, 추가 세액을 징수하는 데 6 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납세자와 조세부의 서면 동의로 만료 전에 시효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연방 세금 신고서에 지적한 변경 사항(연방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조세 회피 의도로 거짓이거나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 징수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상속세 및 법인세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변경, 수정, 재협상 또는 기각의 최종 결정 후 90 일 이내에 최종 변경 사항을 뉴욕주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8 년 4 월 12 일 이후에 제출된 수정 신고서의 경우,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당국의 권리에 대한 시효는, 그러한 수정 신고서상에 이루어진 변경 또는 수정에 기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수정 신고서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1 년입니다(더 긴 기간이 적용되거나 수정 신고서가 연방 변경 사항으로 인한 것일 경우 제외).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납세자는 당국이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 사유와 해당 정보의 사용 방법 및 해당 정보의 미제출 시 결과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Tax Law(세법)는 당국이 세금 신고서나 감사 과정 동안 획득한 정보를 승인 받지 않은 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ax Law(세법)는 정의된 비밀 유지 및 상호주의 기준 내에서 당국이 IRS 및 기타 정부 기관과 납세자의 세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감사 시 대의권

납세자는 감사 기간 동안 스스로를 대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동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납세자로부터 본인을 대리할 수 있다는 적절한 서면 승인서(위임장)를 소지해야 합니다. 위임장 제출 방법은 당국 웹사이트 www.tax.ny.gov/poa 를 참조하거나 당국에 전화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납세자는 감사 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서든 대의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대의권을 확보할 때까지 회의나 면담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재정부의 전직 직원은 조세재정부 퇴직 후 2 년 동안 조세재정부를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일부 제약 사항에 따라, 전직 직원이 2 년의 기간 동안 독립적인 조세 이의 분과(Division of Tax Appeals)를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전직 직원은 재직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 영구히 금지됩니다.

음성 녹음

납세자는 당국에 사전 서면 고지를 제공함으로써 대면 면담을 음성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자체 부담으로 자체 장비를 사용해 녹음해야 합니다. 당국 또한 납세자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를 통해 대면 면담을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당국은 해당 녹음의 녹취록이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해당 비용을 납세자가 당국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현장 감사

현장 감사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기록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최소 15 일 전에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현장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최초 약속을 정하기 위해 감사관이 연락을 드립니다. 납세자는 약속 일정의 확정 및 납세자가 제공해야 하는 장부와 기록을 설명한 서신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업체 감사의 경우, 대부분의 약속은 납세자가 사업 활동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사업체에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기록 수집에 15 일보다 더 소요될 경우, 납세자는 통상적으로 최대 30 일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 일을 초과하는 지연의 경우, 납세자는 여분 시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 회의

최초 회의(개시 회의) 시, 감사관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의 접근방법 및 절차 설명
- 감사 과정 설명
- 납세자가 감사 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의할 권리 및 이의 제기 절차 설명

납세자는 본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이 회의를 이용해 문의하십시오.

감사 방식

당국은 감사를 실시할 때 몇 가지 다른 감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 감사
- 시범 기간 방식을 차용한 감사
- 통계적 표본추출 방식을 차용한 감사

감사관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세금 유형, 기록의 정확성 및 가용성, 그리고 사업체의 규모 및 복잡성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당국은 감사의 범위를 확장해 복수 세금 감사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가 다른 세금의 신고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한 조사 결과는 감사 과정 동안 언제든지 다른 세금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 세금 전문 기관의 감사 조정 사항은 해당 케이스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른 기관의 세금 재산출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판매 및 보상 사용세의 경우, 당국은 당국의 기록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납세자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납세자가 제공한 기록이 당국의 세액 결정에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추가 세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 기간 및 소요 시간

감사는 일반적으로 3 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완료까지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1 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감사 대상인 신고서의 복잡성을 비롯해, 납세자 기록의 시의적절한 가용성, 완전성 및 정확성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 감사 조사 결과

당국은 변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서, 환급 요청서 또는 문서에 변경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관이 감사 서류 사본을 제시하고 감사 조사 결과를 비롯해 감사 방식과 감사 기간 동안 사용된 절차를 간단하고 비전문적 용어로 설명합니다. 조사 결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기간 동안 발견한 회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기록관리 관행에 대한 권장 변경 사항,
-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Tax Law(세법)의 적절한 해석에 대한 설명,
- 추가 세액에 대한 고지, 또는
- 환급액에 대한 고지.

당국은 납세자가 감사 조사 결과를 검토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납세자가 추가 정보를 제출할 경우 감사관이 이를 분석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 서류를 수정 및 재제출할 것입니다.

동의하는 경우

납세자가 감사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당국은 납세자에게 해당 제안서에 서명한 후 전액을 납부하고 이를 해당 감사관에게 회신하도록 요청합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으나 전액을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할부 납부 약정을 맺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시간을 두고 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할부 납부 약정 참조). 이 경우, 미납 잔액에 대해 이자(및 벌금도 가능)가 계속 누적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사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해 감사관에게 이를 회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납세자는 감사관의 감독관과 추가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납세자가 감사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Notice of Deficiency(추징세 통지서) 또는 Notice of Determination(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시점에서, 납세자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 또는 조세 이의 분과(Division of Tax Appeals)를 통해 감사 조사 결과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시면, 통지서를 검토해 이의 제기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이전에 당국에 서면으로 제안서에 대해 거부한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항의 방식에 대한 설명은 납세자의 항의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Notice of Deficiency(추징세 통지서) 또는 Notice of Determination(결정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책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추가 이자 및 일체 벌금의 누적을 막기 위해 제안 세액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 일체 세액을 납부한 후 관련된 세금에 해당되는 기한 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이 이 청구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때 해당되는 법정 기간 내에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 또는 조세 이의 분과를 통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면 감사

서면 감사는 사실상 서면 감사관(기사)과 납세자 간의 대면 접촉 없이 세금 신고서, 환급 요청서 또는 기타 문서를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에 따라 서면 감사는 다른 출처에서 확보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이를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는 당국의 판단으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세금 신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납세자에게 추가 세액이나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감사가 실시 중임을 납세자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당국은 납세자에게 서신을 발송해 서면 감사에 대해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당국은 납세자가 요청에 답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납세자가

답하면, 당국은 납세자의 답변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서면 감사 조사 결과

당국은 변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서, 환급 요청서 또는 문서에 변경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합니다.

납부해야 할 추가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감사 변경안 진술서)* 또는 사유를 설명하는 유사한 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당국은 납세자가 이에 답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사가 납세자의 답변을 분석한 후, 적절한 경우 납부할 금액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환급인 경우, 납세자는 조세부에 대해 다른 세금이나 채무가 없는 한 설명 서신과 함께 환급액을 수령하게 됩니다.(상계 참조).

동의하는 경우

납세자가 감사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당국은 납세자에게 *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감사 변경안 진술서)* 또는 유사 문서에 서명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으나 전액을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할부 납부 약정을 맺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시간을 두고 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할부 납부 약정* 참조). 그러나 미납 잔액에 대해 이자(및 벌금도 가능)가 계속 누적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감사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할 추가 정보를 제출하고 진술서 사본을 당국에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추가 정보를 기사가 분석하고, 적절한 경우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납세자가 감사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Notice of Deficiency(추징세 통지서)* 또는 *Notice of Determination(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시점에서, 납세자는 이전에 당국에 서면으로 납세자가 수령한 *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감사 변경안 진술서)* 또는 유사한 문서에 대해 거부한 경우라도,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 또는 조세 이의 분과를 통해 감사 조사 결과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납세자의 항의 권리* 참조). 통지서에 납세자의 이의 제기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Notice of Deficiency(추징세 통지서) 또는 *Notice of Determination(결정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추가 이자 및 일체 벌금의 누적을 막기 위해 제안 세액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 일체 세액을 납부한 후 관련된 세금에 해당되는 기한 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이 이 청구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때 해당되는 법정 기간 내에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 또는 조세 이의 분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

어떤 유형의 세금에서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원천징수액이나 추정 세액을 초과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 대상 세금 공제액으로 인해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 납세자가 연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환급을 청구합니다. 당국은 이러한 환급을 접수된 신고서의 최초 처리의 일환으로 발행합니다.

납세자가 원래의 신고서 제출 후 세금 공제, 소득 공제 또는 면제 사항을 누락하였음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의 세금의 경우, 환급을 청구하려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유형의 세금의 경우에는 환급 청구서와 함께 오류에 의한 세금 납부나 초과 납부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당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당국이 감사, 평가, 징수 또는 집행 절차 과정 동안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했음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법적 시효로 인해 해당 기간이 끝난 경우, 당국은 초과 납부 사실을 공개하거나, 환급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공제를 승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국이 명시된 기간 내에 환급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신고서 제출 기한이나 신고서 제출일 중 이후 날짜로부터 45 일 이내에 환급을 발행하지 않으면, 당국은 납세자의 개인 소득세 환급액에 이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당국은 요청한 금액에 대한 청구를 승인하거나, 조정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하는 경우, 납세자는 환급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를 더해 수령하게 됩니다. 조정하는 경우, 납세자는 요청한 것보다 적은 금액과 함께 조정 설명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청구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당국은 납세자의 항의 권리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유의 사항: 납세자에게 당국이나 다른 주 기관, 연방 정부, 뉴욕 시 또는 다른 주에 대한 다른 세금이나 채무가 있는 경우, 당국은 납세자에 대한 환급 전액이나 일부를 이들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급액 상계*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당국에 대한 것이 아닌 채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른 기관, 연방 정부, 뉴욕 시 또는 다른 주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상계 참조.)

환급의 조정이나 기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본인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환급을 조정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공식 *Notice of Disallowance(기각 통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납세자는 통지서에서 나와 있는 시간 이내에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과의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또는 조세 이의 분과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납세자의 항의 권리* 참조).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은 당국이 납세자가 제출한 정보를 검토하는 동안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시의적절한 환급 청구를 제출한 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이전에 동일한 과세년도에 대해 소득 및 법인세 추정세에 청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역시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심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한편, 당국이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법인세의 경우, 당국이 *Notice of Disallowance(기각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요청이나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세금에는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심리를 청원하는 데 다른 시간 기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당국이 판매세 환급 청구를 거부할 경우, 납세자는 당국이 청구를 거부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이나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의 경우, 납세자는 종래 신고서 제출 기한 또는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 중 이후 날짜까지 수정 신고서나 기타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3년 기간 이내에 소득, 법인 또는 판매세 신고서에 대한 수정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되는 환급액은 환급 청구 제출 직전 3년 기간 이내에, 신고서 접수 시 연장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더하여, 납부한 세금의 몫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기간 이내에 수정 신고서나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되는 환급액은 환급 청구 직전 2년 기간 이내에 납부한 세금의 몫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기간을 초과해 소득, 유산 또는 법인세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환급이 납세자가 뉴욕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한 연방 변경 또는 수정 사항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납세자는 그러한 변경 또는 수정의 통지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 신고서나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사용해야 하는 환급 청구 양식, 신고서 또는 기타 방식은

환급을 추구하는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하고, 또 적절한 양식을 확보해야 하는 해당 시간 제한에 관한 정보는 **도움이 필요하신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벌금 및 이자

벌금을 물게 되는 세 가지 가장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후 신고,
- 세금 체납, 및
- 추정 세금 미달 납부.

아주 간단히 말해, 벌금과 이자를 피하려면 세금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세자의 세금 책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본 간행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 신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기한 후 제출 및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체납 세액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의 기한 후 제출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50의 벌금이 있습니다.

당국이 전액이 납부될 때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이자와 벌금(있는 경우)이 계속 누적됩니다. 모든 이자는 일일 복리로 계산됩니다. 해당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당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납세자의 항의 권리

당국이 취한 최종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에 양식 CMS-1,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조정 회의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조세 이의 분과에 세금 이의 심리를 요청하는 양식 TA-100, *Petition*(청원서)을 제출해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추정세 또는 결정의 발행,
- 환급 청구의 거부,
- 면허, 등록 또는 면제 증서의 거부 또는 취소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특정 금전 한도 이내일 경우, 납세자는 소액청구과(Small Claims Unit)에서 조세 이의 분과 심리를 열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액 청구 방법 참조). 유산세의 경우, *유산세 이의 제기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이나 조세 이의 분과에서의 정식 선납 심리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신고서상 계산 또는 사무 오류,
- 연방 신고서에 대한 IRS의 변경 사항, 또는
- 신고서상에 표시된 납부해야 하는 금액 전액 또는 일부의 미납.

납세자는 반드시 당국이 조치에 관한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날짜로부터 특정 기간 이내에 요청이나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시간 제한은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시간 제한은 Tax Law(세법)에 의해 수립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요청이나 청원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 당국은 **배달 증명(certified)** 또는 **등기(registered)** 우편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규칙의 목적으로, 제출일은 요청이나 청원이 들어 있는 봉투에 미국 우편 서비스(U.S. Postal Service)의 소인이 찍힌 날짜, 또는 Internal Revenue Code(국세법) 7502 조에 명시된 대로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에서 기록 또는 표시한 날짜를 말합니다. 간행물 55, *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에 이 목적으로 승인된 민간 우송 서비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출석해 본인을 대리하거나, 또는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케이스를 제시해 검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대리인은 납세자의 위임장을 지참해야만 납세자를 대리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제출 방법은 당국 웹사이트 www.tax.ny.gov/poa 를 참조하십시오.

조정 회의

조정 회의는 정식 심리 없이 항의건을 해결하는 더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조정 회의는 조정 위원에 의한 비공식적인 절차로, 조정 위원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조정 회의 후 조정 위원이 납세자에게 동의서 형식으로 해결안을 발송합니다.

- 15 일 이내에 납세자가 이에 서명 후 회신하여 수락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항의건은 종결됩니다.
- 납세자가 15 일 이내에 동의서를 회신하지 않으면 조정 회의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그러면 조정 위원이 30 일 이내에 조정 명령을 발행합니다.
 - 이 명령은 납세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시간 이내에 조세 이의 분과에 심리 청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또는 유산세 케이스의 경우, 카운티의 후견 법원(Surrogate's Court)에 *Notice of Petition*(청원 통지서) 및 *Verified Petition*(청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당국이 조정 명령을 발행하고 90 일 후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한 발행이 채권이나 기타 유가 증권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유통업체, 수입 운송업체, 터미널 운영업체 또는 석유 사업체는 조정 회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행은 오직 조세 이의 분과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조정 회의를 요청하시려면 조세부의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통해(계정이 없는 경우 당국 웹사이트에서 OLS를 검색해 계정을 생성하십시오), 또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에 518-435-8554 번으로 양식 CMS-1,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조정 회의 요청서)를 팩스로 발송하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을 발송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NYS TAX DEPARTMENT
CONCILIATION & MEDIATION SERVICES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0918**

우편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간행물 55, *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조세 이의 심리

조세 이의 심리를 요청하려면 조세 이의 분과에 양식 TA-100, *Petition*(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은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어떤 조치에 항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심리는 공정 행정법 판사의 주재로 열리는 반박 절차입니다. 심리는 속기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심리 후, 납세자 또는 조세부가 조세 이의 위원회(Tax Appeals Tribunal)에 해당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지 않는 한 행정법 판사가 분쟁 사안에 대한 결정을 발행하게 됩니다.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심리 기록 및 추가 구두 또는 서면 주장 검토, 및
- 행정법 판사의 결정을 인용, 파기 또는 수정하는 결정 발급, 또는
- 추가 심리를 위해 행정법 판사에 사안을 환송.

양식 TA-100, *Petition*(청원서)를 비롯해,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Tax Appeals Tribunal*(조세 이의 위원회 규범 및 절차 규칙)은 조세 이의 분과

및 조세 이의 위원회 웹사이트 www.dta.ny.gov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18-266-3000 번으로 전화하거나, 또는 아래 주소로 우편을 발송해 이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DIVISION OF TAX APPEALS
AGENCY BUILDING 1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23**

청원 양식 및 규칙에 대한 요청은 시간 제한의 목적으로 심리 청원 제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써 청원 접수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법원 심사

조세 이의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법원 심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조세 이의 위원회에서 배달 증명 우편 또는 개인 송달로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4 개월 이내). 일부 세금의 경우, 납세자는 법원 심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법원 비용을 더해 납부하거나, 또는 이러한 금액에 해당되는 채권을 발송해야 합니다.

소액 청구 방법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Tax Appeals Tribunal(조세 이의 위원회 규범 및 절차 규칙)*에서 정한 달러 한도 이내일 경우, 납세자는 소액청구과(Small Claims Unit)에서 조세 이의 분과 심리를 열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청구 심리는 공정 주재 사무관이 비공식적으로 실시합니다. 주재 사무관의 결정으로 케이스는 종결되며 조세 이의 분과 내 다른 과, 조세 이의 위원회 또는 주 내 다른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무고 배우자의 책임 면제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양측이 신고서상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자 또는 벌금(있는 경우)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한쪽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배우자가 이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합산 신고서상 세금 책임으로부터 면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 소득 공제나 세금 공제를 청구했기 때문에 세금 축소가 발생한 경우,
-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거나, 또는 더 이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 및
-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인에게 해당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할 경우.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간행물 89, *Innocent Spouse Relief (and Separation of Liability and Equitable Relief)(무고 배우자 면제(및 책임의 분리 및 공정 면제))*
- 양식 IT-285, *Request for Innocent Spouse Relief (and Separation of Liability and Equitable Relief)(무고 배우자 면제(및 책임의 분리 및 공정 면제) 요청서) 및 지침*

유산세 이의 제기 권리

Notice of Deficiency(추징세 통지서) 또는 유산세 환급 청구 거부에 항의하려면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에 양식 CMS-1,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조정 회의 요청서)*를 제출하거나(납세자의 항의 권리 참조), 또는 후견 법원에 특별 절차를 개시하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를 추구하고 싶지만 양식 CMS-1,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조정 회의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거나, 또는 *Conciliation Order(조정 명령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해당 유산의 관할 카운티 내 후견 법원에 *Notice of Petition(청원 통지서)* 및 *Verified Petition(청원 확인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은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어떤 조치에 항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청원서를 작성 후 본인이 수령한 *Notice of Deficiency(추징세 통지서)*, *Notice of Disallowance(기각 통지서)* 또는 *Conciliation Order(조정 명령서)*에 표시된 날짜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원 양식을 확보하려면, 해당 유산의 관할 현지 후견 법원 서기에게 연락하십시오. 청원 양식 및 규칙에 대한 요청은 청원 제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써 청원 접수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후견 법원에 *Notice of Petition(청원 통지서)* 및 *Verified Petition(청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시에 사본을 조세재무국장(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NYS TAX DEPARTMENT
OFFICE OF COUNSEL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0911**

우편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간행물 55, *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징수 과정

납세자의 이의 제기 권리가 만료되었거나 이를 소진한 경우, 당국의 공무 집행 분과(Civil Enforcement Division)에서 징수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에게는 세금 채무를 납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납세자는 할부 납부 약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한 납세자는 절충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이를 반드시 수락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납세자의 제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 최근 과산 면책을 받은 납세자
- 지급 불능의 납세자(채무가 자산을 초과) 및
- 전액을 징수하면 해당인이 합리적인 생활비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경제적 고난**을 초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절충안의 금액은 징수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절충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220, *Offer in Compromise Program(절충안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할부 납부 약정

경제적으로 채무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할부 납부 약정에 대한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당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도움/필요하십니까?* 참조). 이 약정 하에서 납세자는 전체 세금 채무를 월별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본인의 금융기관과 직접 납부 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별 할부 납부금이 자동으로 인출되어 당국의 처리 은행으로 송금됩니다.

그러나 이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총 금액에 한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세금 채무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미납 잔액에 대해 이자와 벌금(있는 경우)이 계속 누적됩니다.

할부 납부 약정 자격을 얻으려면, 양식 DTF-5, *Statement of Financial Condition(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납세자의 현재 재무 상태와 전액 납부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모든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새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라 체납 상태가 됩니다. 당국은 납세자에게 체납 통지서를 제공한 후, 약정에 따라 해당 채무에 대한 징수 조치를 재개하거나, 또는 해당 약정을 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국은 일체 지불금, 환급금 또는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기타 금전을 납세자가 할부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 채무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된 일체 금전은 납세자의 할부 납부 약정의 상환 조건을 경감시킬 것이나, 납세자는 여전히 채무를 전부 납부할 때까지 약정에 따른 월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세 참조*)

당국은 세금 징수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고지 없이 할부 납부 약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최소 30 일 전 고지로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에 한해 할부 납부 약정을 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약정 체결 전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안정한 것임을 당국이 알게 되는 경우
- 납세자의 재정 상태가 중차대하게 변화하는 경우
- 납세자가 기한까지 할부 납부금이나 기타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 향후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요청 시 납세자가 본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갹신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을 종료하게 되면 당국은 이후 채무에 대한 징수 조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부 약정을 체결한 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은 납세자의 차후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 서기 및 뉴욕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세금 보증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세금 보증권 참조).

납세자가 전체 세금 채무를 해결하지 않거나 할부 납부 약정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당국이 절충안을 폐기 또는 거부하는 경우, 당국은 납세자의 세금 채무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체 혹은 제반의 조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증권

당국은 납세자를 상대로 세금 보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증권은 납세자에 대한 민사 판결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해당되는 뉴욕주 카운티 서기 사무실 및 뉴욕주 국무부에 등록, 보관되는 공문서입니다. 세금 보증권 정보는 국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등록된 세금 보증권은 납세자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선취특권을 형성해 납세자가 신용을 획득하거나 재산을 매매하는 능력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해 당국이 납세자의 부동산 및 동산을 압류 및 매각하거나, 임금 및 기타 소득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차압

차압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 압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국은 차압을 집행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양식 DTF-978, *Notice to Judgment Debtor or Obligor(판결 확정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해 징수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재산 목록을 제공합니다. 차압은 가장 빈번하게 은행 계좌에 대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은행은 납세자의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해 당국에 송금해야 합니다. 차압은 대출금이나 납세자가 받아야 하는 임대료 등, 제 3 자가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체 납세자의 경우, 수중 현금이나, 기계 및 장비 같은 사업체 자산에 차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 집행

소득 집행은 납세자의 임금에 대해 이루어지는 차압의 한 유형입니다. 당국은 우선 납세자가 임금을 받을 때마다 총 임금의 최대 10%까지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국은 납세자의 고용주가 납세자 급여에서 총 임금의 최대 10%까지 차감해 이를 당국에 송금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납 세금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소득 집행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압류 및 매각

당국은 면제 대상이 아닌 납세자의 부동산 및 동산을 압류해 경매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압류 시, 징수 대행업체에서 납세자의 사업체 잠금 장치를 바꿔 납세자의 사업체 및 사업체 자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대행업체에서 납세자 사업체의 모든 물품을 없애거나, 또는 사업체 자산을 압류해 이를 경매로 매각할 때까지 다른 곳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당국은 경매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납세자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벌금 및 이자와 함께 압류 및 경매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전액을 납부하거나 만족할 만한 납부 합의에 이를 경우, 당국은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지하고 납세자에게 반환할 것입니다.

납세자에게는 요청 후 60 일 이내, 또는 보다 긴 명시적인 기간 이내에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국은 더 긴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주에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사실을 고지할 것입니다.

또한 당국은 New York Civil Practice Law and Rules(뉴욕 공무 관행법 및 규칙)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자산이 매각되면 당국은 납세자에게 경매 수익의 변제 설명서를 발송합니다. 경매 수익이 납세자의 채무와 당국의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 당국은 해당 초과 금액을 상환합니다.

차압 해지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차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하고 납세자에게 해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납세자가 기저 채무를 납부하거나, 시간의 경과로 인해 채무에 대한 집행 불가 상태가 된 경우,
- 차압을 해지하는 것이 채무의 징수를 촉진하는 경우,
- 납세자가 차압 해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할부 납부 약정을 체결한 경우,
- 압류 재산의 공정 시장가액이 납세자의 세금 채무를 초과하고, 납세자의 채무 징수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고 재산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 경우, 또는
- 개인 납세자의 경우, 그러한 차압이 납세자의 재무 상태로 인한 경제적 고난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의 거래나 사업에 필수적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당국은 상기에 명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그러한 재산을 해지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차압을 해지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세금 채무 징수에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당국의 향후 차압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잘못 차압된 경우, 당국은 압류된 재산이나 그 공정 시장가액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압류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상계

납세자가 주 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주에서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지불금은 납세자가 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채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보류 및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지불금이 이러한 종류의 상계에 적용될 경우, 당국은 사전 서면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상황 하에서, 납세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뉴욕주 세금 환급금 또는 기타 지급금이 있는 경우 이는 뉴욕주 세금 채무를 상계하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납세자가 금전이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다른 주 기관, 연방 정부, 뉴욕 시 또는 다른 주에 송금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주 기관, 연방 정부, 뉴욕 시 또는 다른 주는 납세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납세자의 채무에 환급금을 적용할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미납되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뉴욕주, 뉴욕 시 또는 옹커스 소득세 채무가 있는 경우, 이는 연방 정부 또는 복수주 상계 프로그램(Multi-State Offset Program) 가입 주에 의뢰됩니다. 납세자의 연방 소득세 환급금 또는 기타 주 환급금은 최고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까지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없는 배우자의 환급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기를 기대하는 납세자의 경우, 당국은 해당 환급금을 배우자의 세금 채무나 뉴욕 시 기관에 대한 기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몫의 환급액이 배우자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양식 IT-280, *Nonobligated Spouse Allocation(의무가 없는 배우자에 대한 할당)*을 작성한 후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 해당 양식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 또는
- 환급금을 다른 채무를 상계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당국의 고지 후 10 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

연방 정부에 대한 배우자의 채무나 다른 주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 채무는 양식 IT-280 으로 변제 의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금 미납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최소 \$10,000 의 체납 확정 및 최종 뉴욕주 세금 채무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서는 뉴욕주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정지하기에 앞서 당국은 납세자에게 60 일 이내에 채무를 전액 납부하거나, 만족할 만한 납부 합의를 체결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한해 면허 정지에 항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 통지서에 이름이 명시된 해당 납세자가 아닌 경우,
- 체납 세금 채무를 전액 납부한 경우,
- 문제의 체납 세금 채무, 또는 체납된 자녀 양육비 또는 자녀 및 배우자 생활비 체납액의 변제를 위해 납세자의 입금이 차압되고 있는 경우,
- 납세자의 운전면허가 상업용 운전면허인 경우, 또는
- 납세자가 12 개월 기간 이내에 2 회 이상 납부 약정의 약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당국이 잘못 판단한 경우.

또한 본인이 무고 배우자 면제 자격이 있거나(간행물 89, *Innocent Spouse Relief (and Separation of Liability and Equitable Relief)*(무고 배우자 면제(및 책임의 분리 및 공정 면제) 참조), 또는 파산 청원 제출에 의해 기저 채무의 집행이 유지되었음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조세부의 파산과(Bankruptcy Unit)에 518-457-3160 번으로 전화).

납세자가 통지서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운전면허 정지를 위해 DMV 에 납세자의 케이스를 의뢰하게 됩니다. 실제 정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DMV 는 납세자에게 역일 기준으로 조세부에 대한 세금 채무를 해결할 15 일의 여유가 있다는 내용의 최종 서한을 발송할 것입니다. 제한적인 용도의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정보는 차량관리부 웹사이트 www.dmv.ny.gov 를 방문하십시오.

책임자 사정

판매 및 사용세, 원천과세 및 자동차 연료 특별 소비세 같은 세금의 경우, 사업체의 *책임자*에게 사업체의 뉴욕주 미납 세금 채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해산된 법인의 중역, 이사 또는 직원, 또는 합명회사 또는 개인회사의 직원으로 해당 사업체를 대리해 Tax Law(세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라면 책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과세의 경우, 해당 책임자가 고의적으로 해당 세금을 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어야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임자인지 판단할 때 당국이 고려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인이 능동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운영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 해당인이 어떤 재정적 의무를 지불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관여하는 경우,
- 해당인이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직원 채용 또는 해고 등),
- 해당인에게 수표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 해당인이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 해당인에게 사업 결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경우,
- 해당인이 세금 관리자 또는 총 관리자인 경우, 또는
- 해당인이 회사 중역인 경우.

특정 상황 하에서, 사업체를 대리해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책임자 사정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및 사용세의 경우, 합명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일원이면 해당 합명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리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이 책임자 사정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책임자 사정서를 발부하고 해당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또는 조세 이의 분과 심리를 청원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90 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인에게는 해당 사정서와 책임자로서 본인의 채무를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심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국은 사정에 항의할 권리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기존 사정서에 포함할 것입니다. 판매 및 사용세에 한해, 해당인의 사업체가 동일한 세금 채무에 대해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조세 이의 심리를 청원하는 경우 해당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확실하지 않고 해당인이 사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조세 이의 심리를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자 사정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당국은 해당인의 자산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유사하게 사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관여하고 있더라도 사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채무 전액을 해당인으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자 세금 채무는 파산 시 면책이 불가합니다.

유언 집행인 및 양수인의 유산세 채무

납세자가 유산의 집행인 또는 관리자로서 해당 유산의 수령인에게 자산을 배분하거나, 또는 뉴욕 유산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유산에 연관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미납 유산세에 대해 개인적인 채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유산세가 전액 납부되거나 조세부가 유산세 선취특권의 해지를 승인할 때까지 계속 그 채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유산 수령인으로서 해당 유산에서 재산을 수령한 경우에는 최고 납세자가 수령한 재산의 가치만큼 미납 유산세에 대해 개인적인 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및 생존 배우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탁 계좌

판매 및 사용세 또는 원천과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체 납세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직원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예치하기 위한 신탁 계좌를 개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 계좌는 세금 신고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준비되도록 해 줍니다.

과거 상습적인 체납 관행을 보이는 경우 당국은 납세자에게 신탁 계좌 개설을 요구할 것입니다.

Certificate of Authority(권한 증명서)의 취소 또는 정지 또는 Certificate of Authority(권한 증명서) 발급 거부

당국은 의도적인 미신고 또는 세금 미납과 같이 Tax Law(세법)의 특정 요건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판매 및 사용세 징수 Certificate of Authority(권한 증명서)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Certificate of Authority(권한 증명서)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납세자는 뉴욕주 내에서 Certificate of Authority(권한 증명서)가 요구되는 일체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취소 또는 정지된 증명서로 사업체를 유지하거나 필수 증명서 없이 새 사업체를 시작하려고 할 경우, 당국은 민, 형사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이전의 Tax Law(세법) 미준수에 대해 Certificate of Authority(권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Certificate of Authority(권한 증명서) 취소 또는 정지 절차를 시작하거나 Certificate of Authority(권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당국은 항의할 권리를 포함해 이 과정의 매 단계 동안 납세자의 권리를 고지할 것입니다. 납세자가 채무를 해결하는 등 상황이 이를 보증하는 경우 당국은 이 과정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징수 활동 동안 대의권

납세자는 스스로를 대리하거나 본인을 대리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납세자로부터 본인을 대리할 수 있다는 적절한 서면 승인서(위임장)를 소지해야 합니다. 위임장 제출 방법은 당국 웹사이트 www.tax.ny.gov/poa 를 참조하거나 당국에 전화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면허 및 담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나 다른 정부 기관은 납세자의 면허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에 대해 매입한 일체의 채권 또는 기타 담보를 매각해 납세자의 세금 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취소되면 납세자는 새 채권을 확보해야만 채권이 요구되는 사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또는 불만 제기

조세부에 대해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조세부에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당국 웹사이트 www.tax.ny.gov 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주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불만의 성격에 따라, 당국의 담당자가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추가 심사를 위해 납세자의 불만 사항을 의뢰해 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당국 웹사이트 www.tax.ny.gov 에서

- 정보를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세금을 관리하세요
-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와 기능을 확인하세요

전화 지원

개인 소득세 정보 센터:	518-457-5181
법인세 정보 센터:	518-485-6027
판매세 정보 센터:	518-485-2889
원천과세 정보 센터:	518-485-6654
기타세 정보 센터:	518-457-5735
양식 및 간행물 주문:	518-457-5431
문자전화(TTY) 또는 TDD 장비 사용자	7-1-1 을 눌러 뉴욕 중계 서비스(New York Relay Service) 연결